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폐지이유

○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「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(미래전략담당관-3463[2021.10.25.])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없음(가족지원과-43772[2021.10.18.])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11.25. ~ 2021.12.15.)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,

○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